

# 예방접종 후 매물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에 관한 기준

## 매물기준

- 소**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나 송아지 중 예방접종 하지 않은 송아지
- 돼지** 종돈·모돈·1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예방접종후 14일 비경과시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 이동제한 해제 기준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 후 해제, 이상 없으면 해제

-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혈청검사(전 두수),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 이상)
-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혈청검사(모돈 전 두수, 비육돈 농사별 샘플검사),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 이상)

\* 검사과정 중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에 3주간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과 동원한 검사 실시 →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 통해 해제

## 수매(이동제한 해제 전)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 후 수매

-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혈청검사(전 두수),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임상검사, 위험지역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혈청검사(모돈 전 두수, 비육돈 농사별 샘플검사),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임상검사, 위험지역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도축시 자육은 2% 이상의 방장실에서 알갱이간 보균 후 pH가 6.0 이하인 경우 기공유통하고 도축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 도축장에서 감염축 발생시 해당 농장 자육 폐기

## 사료공장 이동제한 해제 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 가능

소사료의 경우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돼지사료는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기타사료는 해당 시·도내에서만 유통

\* 소·돼지사료 수송차량 구분 조치

## 도축장 폐쇄조치 해제는 가축이동 해제시 이동제한 해제 전은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 도축장 반경 3km내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 가축에 한해 도축 허용

## 축산분뇨 이동제한 해제까지 반출 금지,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회시설 이용, 이동제한 지역내 공동자원회시설 등에서 처리물거할 때 임시 간이저장조(500톤 규모) 지원

## 재입식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사육 조치, 이대 가축방역관이 면노처리, 소독 등 사전 확인 후 30일 이후 입식 허용